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위로금 인상\*
  - \* 대상 확대(42일 이내→최대 90일) 및 지원금 상향(1천만원→최대 3천만원), 기존 제도 시행('22.7.19) 이전 부검 미 실시 사례 지원 신설(최대 2천만원)
- 시간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
  - \*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1천만원), 지원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최대 3천만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붙임 1 참고).

- \*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5천만원 한도) 및 사망위로금(1억원) 지원 ('21.5월 시행, '22.7월 지원금 상향)
-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하여 위로금(1천만원) 지원 ('22.7월 시행)

그 외에도, 그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붙임 2 참고).

- \* (인과성 인정질환)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22.3월), 심낭염('22.5월) 등 2개 질환 추가 (총 11개)
- \*\* (관련성 의심질환) 횡단성척수염·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22.3월), 이상자궁출혈('22.8월), 심근염·심낭염(노바백스, '22.12월) 등 8개 질환 추가 (총 15개)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3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23.4~6월)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23.7월)을 통해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하여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하였다.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와 위로금 인상, ②시간근접·특이경과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 등으로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붙임 3 참고).

### ①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확대

'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천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며, 위로금도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②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 신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천만원)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천만원(1~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피해보상·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2.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  
 3. 기존 지원 제도와 지원 확대 비교

담당 부서 <집행>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심사팀 (심사 및 보상·지원관련)	책임자	팀 장	민유정 (043-913-2261)
		담당자	사무관	황민하 (043-913-2270)
담당 부서 <운영>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이상반응조사팀 (지원위원회관련)	책임자	팀 장	김종희 (043-913-2427)
		담당자	사무관	김유미 (043-913-2420)

- ◆ 예방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기조에 따른 국가 보상, 또는 예산 사업으로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책임 강화

□ **피해보상**

- (제도개요) 감염병예방법 제기조에 따라 예방접종과 피해(사망, 장애, 질병) 사이의 인과성 인정 시(심의기준 ①~③, 11개질환) 국가피해보상 실시
- (보상내용) 사망일시보상금(약 4.8억\*) 및 장제비(30만원), 장애일시 보상금(중증은 사망의 100%, 경증은 55%), 진료비(실비) 및 간병비(일 5만원)  
\* 당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월 최저임금의 240개월분

□ **지원사업** ※ 추후 인과성이 밝혀지는 경우 보상 대상으로 자동 소급

①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21.5월~)**

- (제도개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인정 근거는 불충분하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④-1, 15개)에 대해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내용) 의료비\* 1인당 5천만원 상한('22.7월 3천→5천으로 인상), 사망위로금 1억원 지급('22.7월 5천→1억으로 인상)  
\* 기존 기저질환 등 이상반응과 무관한 비용 제외, 간병비 실비지원(일 5만원 내)

②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업('22.7월~)**

- (개요) 피해보상이나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례 중,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불명'인 사례에 대해 위로금 지원
- (지원내용) 위로금 1천만원 지급 \* 사업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보상 및 지원 실적('23.8월말 기준)>**

(보상) 신청 96,657건, 90,781건(93.9%) 심의, 사망18명 포함 24,376건(27.0%) 보상결정

(지원) 관련성·의심질환 의료비 지원대상(1,903건) 및 사망위로금 대상(9건) / 부검 후 사인불명위로금 대상 56명

사망관련 합계	인과성 인정 사망보상금(4.8억원)	관련성 의심질환 사망위로금(1억원)	부검 후 사인불명 사망위로금(1천만원)
83명	18명	9명	56명

구분		종류	백신
인과성 인정 (심의기준 1~3) (11개 질환)	일반 이상반응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전체 백신
		접종부위(통증, 발적, 부기 등)	
		전신 증상(발열, 오한)	
		신경계(두통)	
		근골격계(근육통, 관절통)	
		위장관계(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림프계 반응(림프절 비대, 림프절염, 림프선염)	
	주요한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전체 백신
		혈소판감소 혈전증	AZ, 얀센
		심근염	화이자, 모더나
		심낭염	화이자, 모더나
관련성 의심 질환 (심의기준 4-1) (15개 질환)	주요한 이상반응	뇌정맥동 혈전증	AZ, 얀센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AZ, 얀센
		길랭-바레 증후군	AZ, 얀센
		면역혈소판감소증(ITP)	AZ, 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AZ
		정맥혈전증(VTE)	얀센
		다형홍반	화이자, 모더나
		(횡단성)척수염	AZ, 화이자 얀센, 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	얀센
		이명	얀센 AZ
		얼굴부종	화이자, 모더나
		안면신경마비(벨마비)	화이자, 모더나 AZ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및 유사사례)	전체 백신
		심근염	노바백스
		심낭염	노바백스

'22.3월 추가

'22.5월 추가

'22.8월 추가

'22.12월 추가

'23.2월 추가

심의 결과		보상여부	현재	개선(안)
인과성 인정	①~③	보상	사망 보상금 4.8억원	→ 연구 등을 통해 대상 지속 확대
	④-1		장애통과 보상금(중증 사망의 100%, 경증 55%)	
			질병 의료비 실비	
인과성 불인정	④-1	(21.5월신설) 관련성 의심질환지원	사망 위로금 5천→1억원 (22.7월상향)	→ 연구 등을 통해 대상 지속 확대
	④-2	(22.7월신설) 부검후 사인불명 (42일 이내) 위로금	질병 의료비 최대 3천→5천만원 (22.7월상향)	
			사망위로금 1천만원	→ ① 사인 불명 위로금 (23.9월 확대) ② 제도시행전 부검미실시사례지원 (신설), 최대 2천만원
	⑤		지원 고려 대상 제외	→ ② 시간 근접등 위로금 (23.9월 신설) ③ 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다각적 검토결정한 경우(신설) 최대 3천만원(1~3천만원)
				→ ③ 지원 고려 대상 제외